

전기요금 차등제 제정 눈앞... 전남 인센티브 '촉각'

에너지 생산지 "요금 차별화"
전남 에너지자립도 전국 3위
시설비 많아 요금인하 '글썸'

수도권과 지방간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일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차등요금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력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은 전남도내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서울 노원구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대안 의결됐다.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등은 국내 총 전력량의 30%(지난 1월 기준, 5만4116GWh 중 1만5655GWh)를 생산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같은 요금체계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력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간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은 190%를 넘는다. 전남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도 남는 전력은 모두 전력 소비가 큰 수도권으로 흘러보낸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기준 발전량을 놓고 봤을 때 전남의 발전량은 6065GWh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다.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9543GWh)이 1위, 열병합발전소 등 복합발전소 생산 비중이 높은 경기(7921GWh)가 2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경북(6124GWh)이 3위다.

전남의 경우 발전량은 많지만 자체 소비량은 적었다. 전력자립도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6065GWh를 생산하고도 52%

지역	발전량	소비량	자립도
전남	6065	3164	191.6%
광주	98	827	11.8%
부산	4138	1914	216.1%
충남	9543	4666	204.5%
경기	8590	1만3359	64.3%
경북	6857	4222	162.4%
경남	4665	3426	136.1%
인천	4335	2387	181.6%
서울	554	4654	11.9%

(3164GWh)만 사용해 자립도는 191.6%로 기록됐다. 자립도는 강원 219.5%(3884GWh 중 1746GWh 사용), 충남 204.5%(9543GWh 중 4666GWh 사용)에 이은 3위다.

전남의 전력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이 가장 높다. 1월 발전량 중 64%(6065GWh 중 3888GWh 발전)가 원자력에서 생산됐다. 부산(고리), 울산(새울), 경북(월성·한울) 등도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높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차등요금제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해 기피시설이 있는 원전 지역에는 전기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도 지방의 전기요금 인하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전기요금 책정기준에 발전소 설치 비용 등이 요금에 반영되다 보니 발전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구 밀도가 낮은 산간·낙도 지방은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했었을 때 전남도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배전에 요금 체계 가중이 붙었을 때 오히려 전남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잘 자라라" 광주·전남지역에 30mm 안팎의 단비가 내린 23일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 일원에서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주민, 하 나돌셋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북구는 식목일을 앞두고 배롱나무와 은목서 30주, 철쭉 100주를 공원 내 산책로 주변에 식재했다.

김양배 기자

5대4...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결론

"법사위 의원 권한 침해는 인정"
국힘 청구 기각·검 청구 각하
"법무장관·검사 청구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는 23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중 법사위원장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

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안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사람들 (510/1000)

신호재
서양화가

관련기사 16면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